#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65 발의연월일 : 2025. 4. 30.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명옥

서천호 • 박준태 • 이달희

강승규・김상훈・최은석

김용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	제23조(임원의 해임)		
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4.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우</u>		